

추가 약정서

[주택 구입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]

주식회사 하나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무자: _____ (인)

주 소: _____

채무자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조 (목적)

이 약정서는 전세자금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

제 2조 (기 보유 주택)

채무자 및 그 배우자(결혼예정자^{주1})를 포함. 이하 같음)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되나,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경우는 포함. 이하 같음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주1)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자에 한함.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 3조(무주택자의 고가주택 취득 등 금지의무)

채무자 및 그 배우자가 제 2조에 명시한 주택이 없는 경우 본 대출기간 동안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^{주2}하거나, 2주택 이상을 취득하지 않습니다.

주2) 소유권 취득.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. 이하 같음

제 4조(주택보유자의 주택 추가 취득 금지의무)

채무자 및 그 배우자는 본 대출기간 동안 제 2조에 명시된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습니다.

제 5조 (주택보유수 확인)

- 은행은 최초 대출실행 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(이하 “HOMS”라 함)을 통해 은행에 등록된 채무자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를 확인합니다.
- 대출실행 후 관련 법령 등의 준수 및 정부정책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를 HOMS를 통해 확인합니다.

제 6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

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- 제 3조에 따른 무주택자 및 그 배우자가 본 대출 전액 상환 전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, 2주택 이상을 취득한 경우
- 제 4조에 따른 주택보유자 및 그 배우자가 본 대출 전액 상환 전에 제 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경우

제 7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

제6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,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3}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.

주3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 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